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극복 지원에 심리치료 포함 등〉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4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난임극복 지원에 심리치료 포함 등	3

I. 개요

1.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5. 2.
- (3) 회 부 일 : 2025. 5.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임산부의 유산·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또한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

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난임 대상 여성의 고령화에 의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Ⅱ. 검토 의견

1. 난임극복 지원에 심리치료 포함 등

- 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신부의 유산·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난임 극복 지원 및 난임·임산부심리상담 센터의 업무의 하나로서 심리치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제1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임신부의 유산·사산(死産)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생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 략)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 4.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의4(난임 · 임신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 · 산후 우울증 극복 및 유산 · 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 · 임신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난임 극복, 산전 · 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 · 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 6. (생 략)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 · 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 · 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 · 임신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상담, 심리치료 및-----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난임 · 임신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 · 운영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상담, 심리치료 및-----

3. ~ 6. (현행과 같음)

② -----

상담, 심리치료 및-----

-----.

□ 안 제7조는 모자보건기구의 관장 사항에 임신부의 유산·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최근 5년간의 유산·사산을 겪는 임신부가 연간 8만에서 9만여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처와 예방 또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등 모자보건 사업의 다른 사항들¹⁾만큼 중요할 것임.

< 최근 5년간 유산·사산 통계 >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6.
유 산	95,562	91,989	89,244	84,904	46,235
사 산	357	295	282	321	158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 「모자보건법」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신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참고로 모자보건사업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단독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계선 조직의 형태로 운영²⁾되고 있음.

□ 안 제11조는 난임극복 지원에 심리치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심리치료는 난임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의학적 증상 및 심리적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는 의료행위로서,

난임 관련 검사 후 정신건강 상 중증도 이상의 문제가 있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신부를 전문의료기관에로의 연계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와 비교할 때 개정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난임극복 지원 사업은 100%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³⁾의 예산 규모가 2021년 673억 3,198만원, 2022년 892억 7,621만원, 2023년 1,058억 8,231만원⁴⁾으로 매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리

2) 서울 도봉구 보건소(도봉아이맘건강센터), 서울 은평구 보건소(모자건강센터),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모자보건지원센터) 등을 예시할 수 있음.

3)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치료까지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의4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업무로서 심리치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중앙상담센터와 권역별 상담센터로 분류되며 2024년 19만여 건에 이르는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24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상담 실적 >

(단위: 건)

기관		상담 건수	개소 시기
중앙	중앙상담센터(국립중앙의료원)	30,507	2018.06
권역	전남권역센터(현대여성아동병원)	28,831	2018.12
	인천권역센터(아인병원)	42,099	2019.01
	대구권역센터(경북대학교병원)	38,306	2019.02
	경기권역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지회)	22,652	2021.02
	경북권역센터(경상북도안동의료원)	17,025	2021.10
	서울권역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6,782	2023.07
	경기북부권역센터(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5,445	2023.10
	경북서부권역센터(경상북도김천의료원)	458	2024.09
	서울서남권역센터(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454	2024.09
	합계	192,559	

* 자료: 보건복지부

4) 정형진 기자, '난임 시술비 지자체 지원 1,000억원 돌파...1위 지자체는 어디?', 아시아경제, 2024.10.27. 중에서 인용

□ 다만,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비록 설치·운영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동 센터의 주요 업무⁵⁾ 중 하나인 ‘상담’은 난임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 및 정서적 지지 또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의 사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⁶⁾인 심리치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동 센터에서 심리치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명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사산의 방지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직접 심리치료를 하기보다는 심리 검사 결과 정신건강상 중증도 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안내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이며, 심리치료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